



국민건강보험공단



수신자 사업장 대표(건강검진 담당자)

제목 2021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실시안내 및 대상자 명단 통보

1.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2021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송부하오니 근로자들이 편리한 시기를 선택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, **빠른 시일 내에 건강검진 실시 안내를 사내공지** 바랍니다.
3. 검진대상자 명단 확인 후 근무구분 또는 대상자 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**건강검진 대상자(추가·제외)신청서**를 작성하여 **사업장 관할지사**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(일반건강진단)에 의한 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< 안내사항 >

- ① 대상자명단에 근무구분이 **공란인** 대상자는 **11월30일 이전에** 근무구분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→ 신고하지 않은 경우 『**사무직**』으로 간주하여 **2022년 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**
- ② **2020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비사무직은 한시적으로 2020년 일반건강검진이 2021년 6월 30일 까지 자동 연장됩니다.** (비사무직 연장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재예방과)
- ③ 사무직 중 **출수연도 출생자**는 전년도 수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④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는 사업장에서 검진대상자로 등록 요청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⑤ **개별종합검진 사유로 검진대상자 취소 신청시에는 검진일자를 기재**하여야 대상자 취소처리가 가능합니다.
 ※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20.1.16.부터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변경 되었습니다.
 -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: 1차(10만원), 2차(20만원), 2차(30만원)
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(과태료부과 기준, 차항)

- 붙임 1. 2021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명단(별첨) 1부.
 2. 2021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실시안내(책자) 1부. 끝.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

2021년 사업장 건강검진 실시안내(요약)

검진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일반건강검진 : 비사무직(매년), 사무직(2년에 1회) ※ 사무직의 일반건강검진은 출생연도(짝, 홀수)를 기준으로 대상 적용(2018년도부터) (단, 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검진대상 적용) · 암검진 : 출생연도(짝·홀수)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						
	암 종	위 암	간 암	대장암 (분변잠혈검사)	유방암	자궁경부암	폐암
	연령	만40세 이상	만40세 이상 고위험군	만50세 이상	만40세 이상 여성	만20세 이상 여성	만54세~74세 고위험군
검진주기	2년	6개월	1년	2년	2년	2년	2년
※ 암 산정특례자 또는 공단검진 중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을 유예(본인 희망시에는 추가 등록 가능)							
검진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일반건강검진(암검진 포함) : 2021.12.31일 까지 · 대장암 분변검사결과 “반응있음”과 위장조영촬영결과 “암의심”자 2단계 암검진 : 2022.1.31. 까지 						
검진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일반건강검진 : 공단 전액부담 · 암검진 : 공단 90%, 수검자 10%(단,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은 공단 전액부담) ※ 국가암검진대상자의 본인부담금 10%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 						
실시절차	공단 ①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송부 ▶ ②-2 대상자 수정사항 처리 후 대상자 명단 재송부		사업장 ② 사업장은 대상자 명단 확인 후 건강검진 실시 ▶ ②-1 대상자 변경 이 필요한 경우 “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(추가·제외)신청서” 관할지사로 제출 ④ 일반검진결과 고혈압, 당뇨병, 폐결핵 질환의의심자는 확진검사까지 받도록 안내			검진기관 ③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실시 ▶ 사업주가 발급한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 및 신분증 지참	
※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검진기관에 검진대상자 명단 제공 불가 [검진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검진대상자 본인이 직접 문진표 작성시 검진기관에 제공 가능]							
결과통보	·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일부터 15일 이내 에 수검자가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						
안내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검진대상자 명단에 근무구분이 공란인 대상자는 11월30일까지 근무구분 신고 (기한 내 미신고건은 사무직으로 간주하여 다음연도 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) · 신규입사자와 전년도미수검자는 사업장에서 실시절차 ②-1처리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음 · 암검진은 대상자 주소지로 검진표(간암, 폐암 표기) 개별 송부함. · 사업장에서 국가검진을 포함하여 추가 종합검진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에게 국가건강검진이 포함된 종합검진임을 반드시 안내하여 이중검진 방지 ·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 변경신청서 작성 시, 개별로 국가건강검진을 이미 받은 근로자를 “종합검진실시”사유로 검진대상자 취소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						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검진전날 저녁 9시 이후에 금식(단, 대장암(분변검사)만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없음) · 문진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 후 제출 · 여성의 경우 생리 중 또는 생리 전·후 2~3일은 건강검진을 피하시기 바람 						
건강검진 기간연장	· ‘코로나19’로 인하여 2020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비사무직은 한시적으로 2020년 일반건강검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자동 연장						

3) 검진항목*

항목구분	검진항목(대상연령 등)		
공통항목	진찰 및 상담, 신체계측, 시력·청력검사, 흉부방사선 검사, 혈액검사(혈색소, 공복혈당, AST, ALT, γ -GTP, 혈청크레아티닌, e-GFR), 요검사, 구강검진		
성·연령별 항목	혈액검사 (이상지질혈증)	남성 만24세 이상, 여성 만40세 이상 (4년에 1회)	남성(만24세,28,32 ...) 여성(만40세,44,48 ...)
	B형간염항원, 항체	만 40세	면역자, 보균자는 제외
	골밀도 검사	만 54세, 66세 여성	
	인지기능장애	만 66세 이상(2년에1회)	만66세, 68, 70 ...
	정신건강검사(우울증)	만 20, 30, 40, 50, 60, 70세	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
	생활습관평가	만 40, 50, 60, 70세	
	노인신체기능검사	만 66, 70, 80세	
치면세균막검사	만 40세	구강검진 항목	

- ※ 신장·체중 및 허리둘레 측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비만도 측정을 위해 본인이 직접 기재
- ※ 비만도는 검진결과에의 정확한 판정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기재토록 안내

◆ 일반건강검진의 주요 안내사항

- **일반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이 2018년도부터 성·연령별로 세분화**되어 검사항목별 대상연령과 주기가 변경되었습니다.(위 **검진항목*** 참조)
-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, 당뇨병,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가까운 일반건강검진결과 고혈압, 당뇨병,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가까운 병·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고혈압, 당뇨병은 대형병원(상급병원, 종합병원) 제외)
 - 진료와 검사 1회에 한하여 공단이 전액 부담
 - * 지정된 검사 외 추가 검사는 본인부담비용 발생
 - 실시기간 : 익년도 1월 31일까지

다. 암검진

1) 검진대상

- 암 종목별 대상기준 및 검진주기

구분	주기	대상자
위암	2년	만 40세 이상인 자(1981.12.31. 이전 흡수연도 출생자)
간암	6개월	만 40세 이상인 자 중(1981.12.31. 이전 출생자) ·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발생 고위험군(간경변증, 만성간질환자 등) · 과거연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 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항체 검사 결과가 '양성' 인 자
대장암	1년	만 50세 이상인 자(1971.12.31. 이전 출생자)
유방암	2년	만 40세 이상 여성(1981.12.31. 이전 흡수연도 출생자)
자궁경부암	2년	만 20세 이상 여성(2001.12.31. 이전 흡수연도 출생자)
폐암	2년	만54세이상 74세이하인자(1967.1.1.~1947.12.31 출생자)

- ※ **2020.11.30. 까지** 공단에 자격취득 신고 된 내역으로 검진대상자 선정.
- ※ 암 산정특례적용자 또는 공단검진 중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 유예(본인이 검진을 희망할 경우는 추가 등록 가능)
- ※ 공단검진 외에 별도로 받은 간염검사결과 B형 또는 C형 간염보균자는 검사 결과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지속적으로 간암검사 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음
- 검진대상자 명단에 간암, 폐암 표기란은 생략하며 **대상자 주소지로 검진표 개별**송부함

2) 국가 암검진

- 대상기준: 2021년 암검진 대상자 중 다음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해당자

< 보험료 부과기준(2020.11월 기준) >
 • 지역가입자: 월 94,000원이하, • 직장가입자: 월 100,000원이하
 *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포함

- 대상자 선정시 자격변동 또는 보험료 미조정 사유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추가 등록을 요청할 경우 국가암 대상자로 등록 가능
- 2021년 직장가입자 신규취득자는 대상자 추가 등록시 입사전 자격에서 국가암 대상자로 기선정된 경우는 자료 연계됨

3) 사업기간(검진실시기간) : 2021년 12월 31일까지

- ※ 상반기 간암 : 1.1. ~ 6.30.까지, 하반기 간암 : 7.1. ~ 12.31.까지
- ※ 위암, 대장암의 1단계 검사 후 2단계 검사는 2022.1.31.까지

4) 비용부담 : 공단 90%, 수검자 10%부담

- ※ 자궁경부암. 대장암은 공단전액부담
- ※ 국가 암검진 대상자의 본인부담금(10%)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

5) 암검진 단계별 검사절차

구분	검진항목	
위암검진	<p>40세 이상 대상자</p> <p>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, 위장조영 검사 선택적으로 시행</p> <p>위내시경 검사 → 조직검사 (↑ 임의심자)</p> <p>위장 조영검사</p>	
대장암검진	<p>50세 이상 대상자</p> <p>분변잠혈 검사(FOBT) 반응있음 → 대장 내시경 검사 → 조직검사</p> <p>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, 대장 이중조영 검사 선택적으로 시행</p> <p>대장 이중조영 검사 (↑ 대장용종 또는 암 의심자)</p> <p>▶주의사항 분변잠혈 검사(대변검사)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 또는 대장 이중조영 촬영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</p>	
간암검진	<p>40세 이상 대상자</p> <p>간 초음파 검사 +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</p> <p>고위험군 기준</p> <p>① 간경변증 ②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③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④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</p>	
여성암검진	유방암검진	<p>40세 이상 여성</p> <p>2년마다 유방촬영검사</p> <p>유방 촬영 유방촬영술은 유방질환의 진단에 있어 무중상 조기 유방암을 발견하는 가장 필수 기본적인 방법으로 유방 압박으로 인한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.</p>
	자궁경부암검진	<p>20세 이상 여성</p> <p>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</p> <p>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검사 전에 반드시 검진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</p>
폐암검진	<p>만 54~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</p> <p>폐암발생 고위험군 기준</p> <p>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현재 흡연중인 자로 해당연도 전 2년내 국가건강검진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하루 한갑 기준 30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건강보험 급여치료 참여자 해당연도 전 2년내 급여치료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하루 한갑 기준 30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</p> <p>저선량 흉부 CT 검사 → 검진결과 사후상담 및 금연상담</p>	